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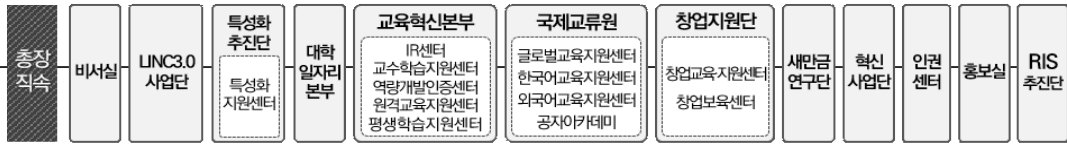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부속교육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 교육기관을 두며, 각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1. 평생교육원 2. <u>보육교사교육원</u> 3. <u>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u> 4. (삭제 2013.4.16.) 5. 교육연수원 (개정 2008.4.28.) 6. (삭제 2018.12.6.) 7.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8. (삭제 2020.9.11.) 9. (삭제 2018.12.6.) 10. 우영관 11. 공학교육혁신센터 (개정 2011.6.28.) 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개정 2011.6.28.) 13. 사이버평생교육원 (개정 2011.6.28.)	제10조(부속교육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 교육기관을 두며, 각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1. 평생교육원 2. <삭제> 3. <u>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u> 4. (삭제 2013.4.16.) 5. 교육연수원 (개정 2008.4.28.) 6. (삭제 2018.12.6.) 7.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8. (삭제 2020.9.11.) 9. (삭제 2018.12.6.) 10. 우영관 11. 공학교육혁신센터 (개정 2011.6.28.) 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개정 2011.6.28.) 13. 사이버평생교육원 (개정 2011.6.28.)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u>2023.00.00.</u>)
(부칙 신설)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3. . .))</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총장



대학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 및 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응용정책학과

단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와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학대학	한의학예과, 한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심리운동 상담학과, 통합행정실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신제) ,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영창변경) , 교육연구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대학본부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 예비군중대
------	-------------------------------------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문화대학원	건축도시조경부동산학과, 상담심리학과

단과대학

문화사회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기술대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신림조경원예학과, 창업컨설팅학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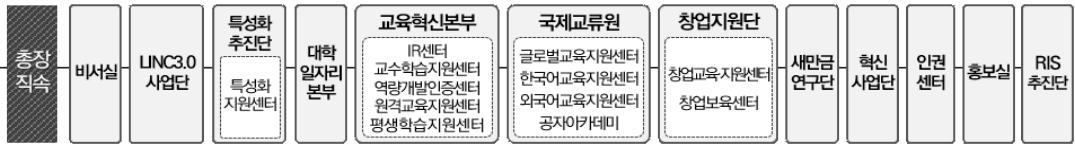
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연교육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개 정(안)

총장



대학과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 및 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단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와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심리운동 상담학과, 통합행정실

〈융합학부〉
스마트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부속아린이전,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치료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청원고교학연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대학본부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 예비군중대
------	-------------------------------------

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 문화 대학원	건축도시조경부동산학과, 상담심리학과

단과대학

문화 사회 대학	스마트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진천)
미래 융합 대학	산림조경원예학과, 창업전실창업학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연교육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	---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통합행정실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협의 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미래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관련학과 학사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5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부분 수정 및 추가 • 제16조(재학연한) 수정 • 제40조의2(경험학습학점제) 부분 삭제 • 제52조(학년수료)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추가 • 제53조(졸업학점)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추가 • 제54조(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예외 적용 • 제55조(학위수여)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제외 적용 등			
기대효과	•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및 LiFE 2.0 사업의 성과 기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5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각 단과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1.19.) 1.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재학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1학기 또는 1년을</u>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호 신설)	제15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u>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u>1. 재학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1학기 또는 1년 단축</u> <u>2.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1년 단축</u>
제16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편입학 및 재입학 후 각각 수업할 연한)의 2배로 한다. (단서 신설) ②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편입학 및 재입학 후 각각 수업할 연한)의 2배로 한다. <u>다만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는 재학연한을 정하지 아니한다.</u> ②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0조의2(경험학습학점제) ①<u>성인학습자가<문구삭제></u> 입학 전 <u>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문구삭제></u> 습득한 근로경험, 학습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경험학습학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경험학습학점제) ①입학 전 습득한 근로경험, 학습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경험학습학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조(학년수료) ①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필하고 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②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 <th>학 년</th><th>수 료 학 점</th></tr> <tr> <td>1학년</td><td>33학점 단, (학과 신설),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td></tr> <tr> <td>2학년</td><td>65학점 단, (학과 신설),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td></tr> <tr> <td>3학년</td><td>98학점 단, (학과 신설),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td></tr> <tr> <td>4학년</td><td>제53조 제1항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단, 약학과(2+4년제) 83학점, 약학과(6년제) 162학점</td></tr> <tr> <td>5학년</td><td>약학과(2+4년제) 125학점, 약학과(6년제) 203학점</td></tr> <tr> <td>6학년</td><td>약학과(2+4년제) 166학점, 약학과(6년제) 243학점</td></tr> </table>	학 년	수 료 학 점	1학년	33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	2학년	65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	3학년	98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	4학년	제53조 제1항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단, 약학과(2+4년제) 83학점, 약학과(6년제) 162학점	5학년	약학과(2+4년제) 125학점, 약학과(6년제) 203학점	6학년	약학과(2+4년제) 166학점, 약학과(6년제) 243학점	제52조(학년수료) ①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필하고 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②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 <th>학 년</th><th>수 료 학 점</th></tr> <tr> <td>1학년</td><td>33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30학점,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td></tr> <tr> <td>2학년</td><td>65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60학점,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td></tr> <tr> <td>3학년</td><td>98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90학점,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td></tr> <tr> <td>4학년</td><td>현행과 동일</td></tr> <tr> <td>5학년</td><td>현행과 동일</td></tr> <tr> <td>6학년</td><td>현행과 동일</td></tr> </table>	학 년	수 료 학 점	1학년	33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3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	2학년	65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6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	3학년	98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9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	4학년	현행과 동일	5학년	현행과 동일	6학년	현행과 동일
학 년	수 료 학 점																												
1학년	33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																												
2학년	65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																												
3학년	98학점 단, (학과 신설)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																												
4학년	제53조 제1항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단, 약학과(2+4년제) 83학점, 약학과(6년제) 162학점																												
5학년	약학과(2+4년제) 125학점, 약학과(6년제) 203학점																												
6학년	약학과(2+4년제) 166학점, 약학과(6년제) 243학점																												
학 년	수 료 학 점																												
1학년	33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3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35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40학점, 약학과(6년제) 41학점																												
2학년	65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6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70학점, 한약학과·한의(예)학과 80학점, 약학과(6년제) 81학점																												
3학년	98학점 단,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90학점 ,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2+4년제) 42학점, 약학과(6년제) 122학점																												
4학년	현행과 동일																												
5학년	현행과 동일																												
6학년	현행과 동일																												
제53조(졸업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과 신설),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40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60학점, 약학과(2+4년제) 166학점, 약학과(6년제) 243학점으로 한다.	제53조(졸업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120학점,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40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60학점, 약학과(2+4년제) 166학점, 약학과(6년제) 243학점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54조(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종합시험, 실기 및 작품발표, 해당 학과(부) 관련 자격증 및 인증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종합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는 예외로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제55조(학위수여) ①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 또는 별지서식 제1-2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학과(부)별 이수학점총괄표에 의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2. 8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조기졸업 대상자는 제외)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가 인정된 자<u>(단서 신설)</u> 4. TOPIK 성적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인에 한함). 단,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5. 외국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양교의 학점이 수 및 졸업에 관한 기타요건을 충족한 자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본교에 해당 학과(부)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 1-3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부)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2023.2.20.) <u>(이하 생략)</u> <u>(신설)</u>	제55조(학위수여) ①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가 인정된 자<u>(미래융합대학 전학과 제외)</u> 4.~5.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u>별표 3</u>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2023.2.20., 2023.00.00.)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u>(학과 신설)</u>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u>심리운동·상담학과</u>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u>(학과 신설)</u>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u>스마트관광학과</u>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u>(학과 신설)</u>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u>산림조경원예학과</u>
<u>(학위 신설)</u>	<u>(학과 신설)</u>	<u>건설팅학사</u>	<u>창업건설팅학과</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RIS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 사항 있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참여에 따른 다전공 이수 근거 조문 신설 • “부정행위자의 성적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의 0점은 국가장학금의 신청에 제약을 주어 학교 중도탈락률을 높이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 09. 26.)에 따른 조건부 이행조건 * 학칙 제43조 제2항의 “부정행위자의 성적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학칙이 아닌 규정에 “정기시험 결시자는 F등급으로 처리한다” 라고 명시함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내 학부 설치에 따른 다전공(복수,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 기준 • 학칙 제43조 제2항의 “부정행위자의 성적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부분 삭제		
기대효과	•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참여에 따른 학생의 다전공 이수 증가 • 중도탈락률 개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 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단과대학) ①본교에 단과대학으로서 보건복지대학, 문화사회대학, 과학기술대학, 식품과학대학, 체육과학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양대학, 자율전공대학, 미래융합대학을 둔다. ②본교의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정원은 매 학년도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며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모집단위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의 일부 인원은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입학한 학생은 자율전공대학 소속으로 한다. ⑤통합모집 및 자율전공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단과대학) (현행과 같음)
<u>〈조 신설〉</u>	<u>제5조의2(JST 공유대학)</u> ①본교에 정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에 의한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을 둔다. ②공유대학 내에는 다음 각 호의 학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칙 제 규정의 우선 적용을 전제로 한다. 단, 공유대학 규정과 본교 규정이 상이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한다. 1. 미래수송기기학부(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 전공) 2. 에너지신산업학부(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전공) 3. 농생명·바이오학부(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전공) ③JST 공유대학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JST 공유대학 학생의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JST 공유대학 학생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⑥JST 공유대학 학생의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⑦JST 공유대학에서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JST 공유대학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0.00.]
제43조(성적 평가기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 및 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각 교과목의 출석이 총 수업시간 3분의 2에 미달자 및 정г시험 부정행위자<문구삭제>의 성적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성적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각 교과목 출석이 총 수업시간 3분의 2에 미달자의 성적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